

- '22.06.02. '22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'개선권고'
- '22.09.22. 소상공인 지원 적용범위 관련 업무협의(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)
- '22.10.07. 경제노동위원회 도의원 면담(조례 개정안 관련 협의)
- '22.10.17. 규제완화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
~10.21.
- '22.11.30. 일부개정조례안 발의(대표발의 고은정)
- '22.12.06. 상임위원회(경제노동위원회) 의결(원안가결)

## 개선효과



- 소상공인으로의 진입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하고, 지역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도모

## [「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개정 내용]

현 행	개 정 (안)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경기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<u>주소와 사업장</u> 을 두고 「소득세법」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.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<u>창업예정자</u> 에 대하여는 제7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	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경기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<u>사업장</u> 을 두고 「소득세법」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.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<u>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창업예정자</u> 에 대하여는 7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

## 02 영유아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선

추진부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☎ 031-8008-4953

## 개선배경

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의한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곳으로 가정적인 분위기로 영유아가 적응하기 쉽고,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등원의 편리함이 있는 어린이집임
- 다만, 「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」(이하 '준칙'이라 함) 제53조(관리주체의 동의 기준) 제1호 나목, 제 16호에 따라 공동주택 전유부분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자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.
-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이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5조의2제1항에 의거 적법하게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이 「준칙」과 동일한 경우 인접한 세대의 입주자등에게 동의를 받지 못하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영유아의 보육 받을 권리와 어린이집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임.

## 개선내용



## 개선 전
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5조의 2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은 어린이집도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에게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게 됨



## 개선 후

- 「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」 제53조제1호나목 및 제53조제6호에서 어린이집 부분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법과 상충하는 부분 해소  
-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에서 어린이집 삭제

\* 입주자등에게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도 영업이 가능해짐

- '22.05.11. 규제개선을 위한 시·군 간담회 건의(과천시)
- '22.05.20. 규제개선을 위한 시·군 간담회 건의과제 검토결과 제출(공동주택과)
- '22.10.26. 준칙(제17차) 개정(안) 의견조회\* 완료
  - \*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 시·군 보육관련부서로 의견조회 결과 31개 중 30개 시·군 개정(안) 찬성
- '22.11.29.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(별도의견 없음)
- '22.12.09. 준칙(제17차) 시행

## 개선효과



-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영업권 보장 및 영유아의 보육받을 권리 보장

## [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(안) ]

현 행	개 정 (안)
제53조【관리주체의 동의 기준】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53조【관리주체의 동의 기준】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(생략) 가. (생략) (1) ~ (2) (생략) 나.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(1) 세대내 과외(피아노, 놀이방, 합숙소, 공부방, <u>어린이집</u> 등)등을 하는 행위(단,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) (1) ~ (5) (생략) 중략	1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(1) ~ (2) (현행과 같음) 나.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(1) 세대내 과외(피아노, 놀이방, 합숙소, 공부방, <u>어린이집</u> 등)등을 하는 행위(단,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) (1) ~ (5) (현행과 같음) 중략
6. 전유부분을 <u>어린이집</u> , 놀이방,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총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(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(직상하층 포함)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.)	6. 전유부분을 <u>어린이집</u> , 놀이방,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총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(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세대와 인접(직상하층 포함)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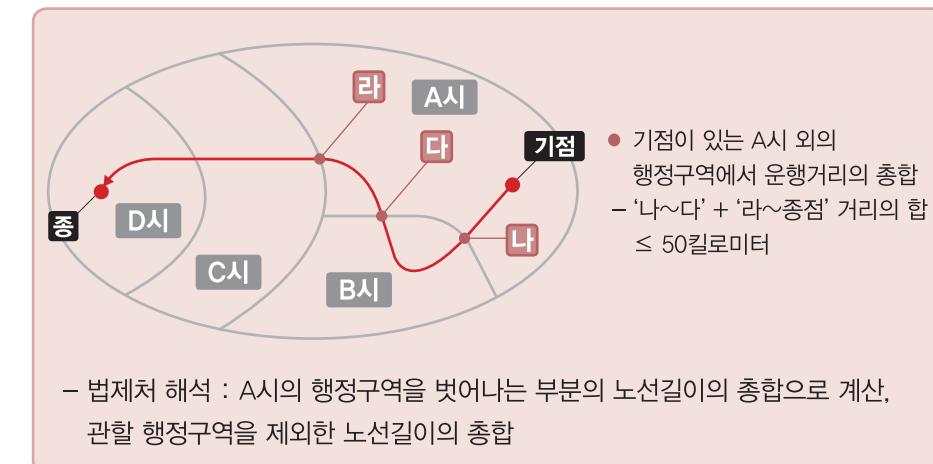
## 03 시내버스 행정구역 경계거리 완화

추진부서 평택시 대중교통과 ☎ 031-8024-4694

## 개선배경


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,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기점과 종점이 모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둘 이상의 시·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
- (문제점) “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”라는 법문으로 인해 평택시의 경우 안성IC를 이용하여 서울로 광역버스 운행이 불가한 상황임
  - ① 평택 → ② 안성 → ③ 안성IC → ④ 평택 → ⑤ 오산 → ⑥ 서울



- 기점이 있는 A시 외의 행정구역에서 운행거리의 총합  
- ‘나~다’ + ‘라~종점’ 거리의 합 ≤ 50킬로미터

- 법제처 해석 : A시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부분의 노선길이의 총합으로 계산, 관할 행정구역을 제외한 노선길이의 총합

☞ 해당규정으로 인해 평택시 시내와 인접한 안성IC, 송탄IC 등 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오산IC를 통해 고속도로를 진입하여 광역버스 이동시간 과다소요 및 서비스 수준 저하 발생